

## IV.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 1. 보험요율 체계 개편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본원칙으로 보험요율의 충분성(adequacy), 공평성(equity), 비과도성(not excessiveness)이 있다. 충분성이란 계약자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료가 장래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될 보험금과 보험회사의 경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가를 말하며, 공평성은 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를 하는 것이다. 비과도성은 예상되는 보험료가 불합리할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예금보험에 적용시켜 보면 보험요율의 충분성이란 금융위기가 아닌 평상시에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의 지원 없이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금보험도 일반보험과 같이 위험발생 예상율과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다수의 금융기관이 지니는 파산의 확률을 계산하여 장기간 예금보험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충분성의 원칙을 그대로 예금보험요율의 산정에 작용하여 금융위기시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예금보험요율을 산정한다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많다. 이는 요율산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비과도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요율책정에 있어서 충분성의 원칙은 하한선을, 비과도성의 원칙은 상한선을 의미한다(예금보험공사, 2000, 51쪽).

예금보험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란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을 동종 금융기관별,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예금보험 요율체계도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인 바,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부문간 요율체계 개편과 금융부문내의 금융회사간 요율체계 개편, 그리고 예금보험료의 산출기준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업종별 보험요율 수준 적정화

금융부문(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신탁)간 요율체계 개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금보험료의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별 파산확률을 감안한 보험요율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파산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파산경험을 토대로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파산 예측수단으로는 부적절하며, 파산예측모델에 전제된 가정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여 유효하지 않을 경우 모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금융기관의 숫자와 평균 정리비용은 국가별로 금융산업의 구조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각국은 사전적립방식과 사후각출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의 경우 사후각출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더 많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료 적립방법의 개선보다 시급한 것이 금융권별 적용하는 보험료율 수준의 적정화 문제이다.

제3장에서 분석하여 본바와 같이 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부의 이전(보조금 지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손해보험은 다른 금융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손해보험계약자의 부가 타 금융권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기관별 파산확률을 정확히 예측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별 손해를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의 적정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표 III-9>에 분석한 바와 같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은 은행의 현행 요율(0.1%)을 적정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각각 0.138%와 0.009%가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현행 금융권역간 보험요율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나. 차등보험요율체계 도입

국내에서도 지난 1999년부터 금융회사간 차등보험요율제도 도입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sup>36)</sup>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예금보험료의 차등요율 도입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은 연구가 이론적·실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차등보험요율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 사전적으로 경영평가 판단의 객관성이 검증되어 해당 금융기관이 수급할 수 있어야 한다.

### 1) 보험요율 차등화 방법

차등보험요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자본의 건전성 지표와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평가관련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는 이미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본건전성비율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차등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36) 예를 들면, 예금보험공사(1999)가 있다.

<표 IV-1> 국내 금융기관 자본건전성 비율

금융기관	경영지도기준 (자본건전성비율)	기준비율	적기시정조치
은행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경영개선권고 : 8%미만 경영개선요구 : 6%미만 경영개선명령 : 2%미만
증권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경영개선권고 : 150%미만 경영개선요구 : 120%미만 경영개선명령 : 100%미만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	경영개선권고 : 100%미만 경영개선요구 : 50%미만 경영개선명령 : 0%미만
종금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경영개선권고 : 8%미만 경영개선요구 : 6%미만 경영개선명령 : 2%미만
여신전문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7%(8%)	경영개선권고 : 7%(8%)미만 경영개선요구 : 4%(6%)미만 경영개선명령 : 1%(2%)미만
상호저축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5%	경영개선권고 : 5%미만 경영개선요구 : 3%미만 경영개선명령 : 1%미만

주: 여신전문의 ( ) 안은 카드사에 대한 기준임.

## 2) 보험료를 차등 적용체계

미국과 캐나다의 차등보험요금 제도를 준용하되, <표 IV-1>에서 보듯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건전성의 기준비율은 각 금융권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자본건전성비율을 기준으로 각 금융권별로 우선 등급화 한다. 다음에는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영실태평가등급(1~5등급)을 감안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자본건전성비율과 경영실태평가등급에 대하여 각각 70% 및 30%의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두 점수를 합한 점수별로 기준요율의 일정비율을 예금보험요율로 책정한다.

## 자본건전성비율(70점)

## &lt;등급별 점수 차등화&gt;

- 1등급 : 70점
- 2등급 : 60점
- 3등급 : 50점
- 4등급 : 40점

## 경영실태평가등급(30점)

## &lt;등급별 점수 차등화&gt;

- 1등급 : 30점
- 2등급 : 25점
- 3등급이하: 20점

&lt;표 IV-2&gt; 자본건전성 비율에 따른 등급설정

등급	은행,종금, 카드	증권	보험	여신전문	상호저축
1등급	10% 초과	180% 초과	150%초과	10%초과	7%초과
2등급	8%초과~ 10%미만	150%초과~ 180%미만	100%초과~ 150%미만	7%초과~ 10%미만	5%초과~ 7%미만
3등급	6%초과~ 8%미만	120%초과~ 150%미만	50%초과~ 100%미만	4%초과~ 7%미만	3%초과~ 5%미만
4등급	6%미만	120%미만	50%미만	4%미만	3%미만

&lt;표 IV-3&gt; 점수에 따른 예금보험요율

자본건전성 점수(A)	경영실태평가 점수(B)	총 점수(A+B)	보험요율
40점~70점	10점~30점	90점이상	기준요율 × 50%
		80점이상~90점미만	기준요율 × 75%
		70점이상~80점미만	기준요율 × 100%
		60점이상~70점미만	기준요율 × 125%
		60점미만	기준요율 × 150%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준요율의 설정이다. 현재 국내의 예금보험요율은 금융기관별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별 차등요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파산확률 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예금보험요율의 산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변경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산출기준(exposure unit)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금 등의 평균잔액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규모는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량인 수신규모가 가장 적합함에도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계약누적책임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보험계약기간이 생명보험의 경우 10년 내지 30년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수신규모의 대표치로는 부적당하다.

예금보험료의 산출대상은 해당 기금 소속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에 대한 것이므로 소속 금융기관간 공평성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으로는 보험회사의 영업규모를 잘 반영하는 수입보험료 기준이 타당하다. 예금보험의 궁극적인 부담을 고려해 보아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현재의 금융기관 파산에 대한 부담은 현재의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마땅하나, 예금보험료의 부과절차상 미래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므로 예금보험료의 궁극적인 부담자인 미래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로 부과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기준의 예금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sup>37)</sup>.

37)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주요 국가에서 부과되는 보험회사의 부담금 산출기준은 수입보험료이다(<표 II-2> 참조).

## 2. 금융업종별 차등보장 및 공동보험제도 도입

예금보험의 한도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정책목표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보장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금융위기사 불건전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전한 은행에서도 연쇄적인 예금인출 사태를 야기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희생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주 목표가 소액 예금자를 위한 것이라면 보장한도를 낮게 설정하고, 반면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을 독려하거나 국내 은행산업의 보호에 정책목표를 둘 경우에는 보장한도를 높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보장은 현행대로 부분보장으로 유지해야 하며 보장한도 5천만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권역간 보장한도 및 급부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피하고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확대 및 축소해야 할 것이다. 즉 보험계약자의 보장한도는 확대되어야 하며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자의 보장한도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예금보험의 국제적 기준과 취지상 적합하다.

영국의 보상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감독기구와 예금자보호기구가 금융권역별 구분 없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제도상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즉, 기본보장은 2천 파운드 한도 내에 전액 보상을 하고 초과분은 90퍼센트만 보상해주는 공동보험을 통해 부분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반면에 은행 예금자의 경우 3만5천 파운드로 한도를 정해 놓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한도 없이 보장을 해주고 있다. 단, 의무보험은 전액 보장을 해주고 있다.

Arrow(1971)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공동보험(coinsurance)을 예금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에 권역별로 차등화된 보상한도의 시행과 기본보장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5천만원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3천만원까지는 전액 보상하되 초과분 2천만원까지에 대해서는 90퍼센트만 보상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3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장은 한도를 정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sup>38)</sup> 이는 전선애(2002) 등에서 제시되었듯이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 감소뿐 아니라 소액 예금자/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는 측면의 정책적 변화를 수반한다.

### 3. 목표기금제 도입

#### 가. 목표기금제도의 필요성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보험료를 적립하여 조성하는 기금이며 장래 예상되는 보험금지급 등 자금지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기금을 목표 보험기금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목표기금제의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적립률 설정은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경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목표수준의 달성 및 유지는 보험기금의 건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영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목표보험기금을 달성한 후에는 보험료부담을 크게 완화시킴으로써 건전경영 및 이를 위한 상호감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38) 자동차보험과 의무보험은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2003년 8월 30일 이후 전액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의 설립에 따른 초기 재원 및 적정기금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목표기금적립률의 설정은 금융기관의 반발을 억제하며 신속한 필요기금의 적립을 가능케 해준다. 목표기금적립률은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의 상한으로 작용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기금이 목표적립률에 도달할 때까지 금융기관의 반발을 억제하면서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보험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금융권별로 운용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에 대해 목표기금적립률을 설정하여 타 금융권으로의 자금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금융권별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해 주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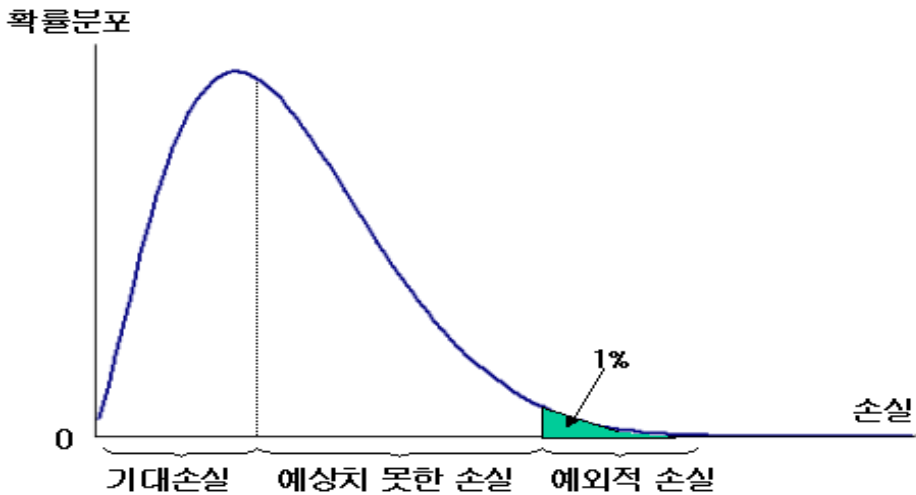
#### 나. 목표기금의 적정규모

목표기금의 적정규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표규모를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기금의 목표규모가 높게 설정될수록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상회하는 보험료 인상은 결국 부보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오히려 기금 손실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료는 부보금융기관이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적정 목표기금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추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VaR(Value at Risk)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99% VaR를 적용하는 경우 <그림 IV-1>과 같이 예금보험기금은 1%의 예외적 손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실을 감당할 만큼 적립규모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목표기금의 적정규모는 기금의 손실분포에 기초하여 기금의 정상손실(normal loss)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해서 적정한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기금의 손실분포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부보금융기관의 부실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은 예금보험제도의 정책과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들이며, 이에 대해 예금보험기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은 이들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여 부보금융기관의 파산확률의 예측을 정교화 하는 것이다.

<그림 IV-1> 손실분포와 VaR



그러나 부보금융기관의 부실화 확률이 어떠한든 예금보험기구는 항상 이로부터 기금에 유발되는 손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보한도의 선택, 부실금융기관에의 개입시점의 선택,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의 선택 등에 따라 궁극적인 기금손실의 규모는 달라지며, 예금보험기구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지위 종결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금손실의 규모는 한층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회계에 시차가 존재하지 않아 예금보험기구가 정확한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엄격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적용할 경우 부보금융기관이 부실화 된다 해도 기금의 손실

은 방지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보한도, 부실금융기관 개입시점,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기타 기금손실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구에 허용되어 있는 권한 등은 기금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 권한의 보유와 권한행사 능력 등에 따라 적정 기금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표 IV-4> 외국의 적립규모 사례

국 가	기금적립목표	보험요율
대만	부보예금 5%	0.015%
벨기에	부보예금 0.5%	0.02~0.04%
크로아티아	부보예금 5%	0.8%
핀란드	부보예금 2%	위험가중 0.05~0.3%
헝가리	부보예금 1.5%	위험가중 0.3%까지
이탈리아	총예금 0.4~0.8%	위험가중 0.4~0.8%
아르헨티나	총예금 5%	위험가중 0.36~0.72%
미국	부보예금 1.25%	위험가중 0.00~0.27%

자료: 김대식 외(2004)

#### 마. 목표기금제의 보험료 운영

경제이론에 의하면 적정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기관의 금융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만일 시장이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책정되지 못할 경우 은행은 동일 위험군 내에서 혹은 위험군 간에 차익거래(arbitrage)가 발생하여 과대평가된 자산에서 과소평가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보험료수입은 실제 예금보험기구에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보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위험에 기초하지 않고 보험당국 이나 감독당국이 일방적으로 보

험료를 결정할 경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또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Feldman(1998)은 예금보험기구가 목표적립률을 유지하고 목표적립률에 연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험에 기초한 적정예금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보험료는 과거에 발생한 보험기금 손실을 반영하여 책정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예금보험기구에 적립된 기금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더욱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금보유액은 과거에 발생한 일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미래에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예측하는 정확한 척도는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된 기금이 적을 경우 정책당국자들은 적정예금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금보험료가 과소하게 징수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적립된 기금이 충분할 경우에는 적정예금보험료가 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보금융기관은 정책당국에 리베이트를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예금보험기구들이 적정예금보험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고정예금보험료나 혹은 목표기금에 연계한 보험료(목표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적정보험료를 추정하는 것이 보험기구나 규제당국이 얻을 수 있는 정보 제약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적정예금보험료는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없기 때문에 적정보험료 산정시 주관적 혹은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위험이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모든 은행에게 시간에 불변하는 고정예금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규제당국과 은행이 객관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고정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또다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므로 고정보험료의 책정도 의견상 보이는 것처럼 쉬운 작업은 아니다. 원론상 고정예금보험료가 장기 평균 적정예금보험료(long-run average fair rate)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평균적정 예금보험료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

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편한 방법은 기금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금보험료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만일 평균목표기금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장기평균 적정예금보험료로 조정된다면, 목표기금보험료 체계가 고정보험료 체계보다는 우수한 예금보험료 체계가 될 것이다. 언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만일 예금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의 기금이 유지되도록 하여 기금에서 발생한 평균손실에 상응하도록 평균예금보험료가 책정되면, 목표기금예금보험료 체계 하에서도 정확한 적정예금보험료에 대한 사전적 지식 없이도 적정평균 보험료에 근접한 보험요율을 책정하게 될 것이다.

#### 4. 업종별 기금 분리운영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질적 발전과 진정한 의미의 계약자보호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보험 종목별로 별도의 계정구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통합된 예금보험기금 내에 구분되어있는 6개 권역의 기금 운영을 구분계리보다는 차단벽이 강화된 분리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현행 은행기금과 생명보험기금, 손해보험기금 등 권역간 기금의 구분계리(segmentation within account)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금계정 등으로 분리하여(separate account) 기금간 전용이 불가하도록 하는 권역별 기금계정의 독립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금은 종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분화된 계정 간에는 기금의 전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계정으로 세분하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계정으로 세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세분화된 분리계정에 의해 차등화된 예금보험료 납부를 통하여 보험회사는 스스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험도에 따라 재구성할 유인이 생길 것이고, 위험관리를

위해 특정 종목에 특화하는 보험회사도 출현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예금보험법에서 보험권역을 분리하여 보험업법 하에 보증기금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기금의 분리는 부실기금의 권역간 이동을 차단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료 분담도 획일성을 피하고 자체기금에 적립되어 운영되므로 형평성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저축기관을 포함한 은행권과 보험권의 기금 이원화가 예금자/계약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면 굳이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맞추어 예금자보호기금의 통합운영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